

감정평가서

건명	유정희 소유물건(2024타경533884)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송애순
감정서번호	MRH240524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루한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이서원

감정평가액	팔천만원정(W80,000,00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송애순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인천지방법원 경매2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유정희 (2024타경533884)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05.31	2024.05.30 ~ 2024.05.31	2024.06.03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세대 이	구분건물	1세대 하 여	- 백	80,000,000
	합계					₩8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소재 "북인천여자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삼미빌라 제1층 제103호(전유면적 : 41.40㎡)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 및 감정평가 제이론에 의거 감정평가 하였음.

3. 실지조사 실시기간, 기준시점 및 기준가치

1)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기준시점

본건의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4년 05월 30일 ~ 2024년 05월 31일로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가격수준 등을 확인하였으며,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05월 31일임.

2) 기준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4. 감정평가의 조건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4-29 삼미빌라 제1층 제103호			사용승인 일자	1995.02.22			
건물 주용도	다세대주택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전체층수	5층			용도지역	준공업지역			
구 분			전유면적 (m ²)	공용면적 (m ²)	분양면적 (m ²)	전용률 (%)	대지권 (m ²)	용 도
기호	해당 층·호수							
가	제1층	제103호	41.40	4.84	46.24	89.53	20.53	다세대 주택

6. 그 밖의 사항

- 가. 본건 구분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에 의하였음.
- 나. 본건 호별위치와 내부구조 및 이용 상태는 관계인의 폐문부재로 표준적인 이용상태 및 집합건축물대장도면을 기준으로 현지 조사한 사정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다.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바 토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함. 다만 귀 요청에 의거 대상 부동산의 평가액을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토지, 건물 배분비율표]를 참조하되,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 가격형성 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을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에 배분하여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액 결정의 방법

(1) 평가방식은 대상물건의 성격·평가목적 또는 평가조건에 따라 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원가방식, 시장성의 원리를 따르는 비교방식 및 수익성의 원리를 따르는 수익방식이 있음.

평가방식	평가방법	평가방법의 적용
원가방식	원가법	원가법이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이 때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공시지가기준법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이란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본 평가에서 구분건물은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용재, 부대설비, 시공정도, 현상 및 인근지역 내 유사 구분건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상기 방법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액과 다른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본건이 비수익용 부동산이라는 점 및 전유부분(건물)과 대지권이 일체로 효용을 발생시키는 대상물건의 특성 등에 의거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인근지역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AIS 감정평가정보체계)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	거래시점	거래금액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비고
					사용승인일			
㉠	효성동 506-24	뉴코아맨션 제1동 제1층 제00호	47.98	22.58	2024.03.30	92,000,000	1,917,465	다세대 주택
					1995.05.17			
㉡	효성동 623-57	- 제2층 제00호	36.72	25.63	2024.02.05	70,000,000	1,906,318	다세대 주택
					1994.01.11			

2) 인근지역 평가선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호수	전유면적 (㎡)	평가 목적	기준시점	평가금액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사용승인일		
㉢	효성동 404-10	영진빌라 1동 제2층 제00호	33.24	경매	2024.01.25	66,000,000	1,985,560
					1991.05.16		
㉣	효성동 273-96	삼우빌라 제4층 제00호	40.44	경매	2024.04.12	81,000,000	2,002,967
					1992.05.1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감정평가액의 산출 및 결정

(1) 적용사례의 선정

인근 시세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고 있고 본건과 층별, 위치별, 평형별 효용이 유사하며 건물의 구조와 설비, 관리상태 및 입지조건, 주변환경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에서 비교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①을 선정함.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	거래시점	거래금액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비고
					사용승인일			
①	효성동 506-24	뉴코아맨션 제1동 제1층 제00호	47.98	22.58	2024.03.30	92,000,000	1,917,465	다세대 주택
					1995.05.17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감정평가에 있어서 비교사례로 선정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치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기 선정된 거래사례는 특별한 사정의 개입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음(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시점수정

① 시점수정 기준

- ㄱ. 시점수정이란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치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준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임.
- ㄴ. 사례는 유형적으로 유사한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월간동향)의 지역별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해당 월 가격지수가 미고시된 경우 직전 월의 가격지수를 적용하였음.

② 시점수정치 내용

지 역	시점수정치	시점수정치 산정
인천광역시 (24.03.30~24.05.31)	0.99692	연립다세대 지역 : 인천광역시(24.03.30~24.05.31) 거래시점 : 2024.03.30, 2024년02월 지수를 적용 함 기준시점 : 2024.05.31, 2024년04월 지수를 적용 함 2024.03.30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02월) : 97.3 2024.05.31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04월) : 97.0 시점수정치 : $97.0/97.3=0.9969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가치형성요인 비교

구 분	조 건	격차율 (본건/사례①)	비 고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1.00	본건은 사례① 대비 대체로 유사함
건물요인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면적구성 (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 (복도식/계단식) 등	1.00	본건은 사례① 대비 대체로 유사함
개별요인 (호별요인)	층별효용, 향별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1.01	본건은 사례① 대비 전유면적등 개별요인에서 다소 우세함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거래사례 및 평가선례 감안
누 계 치		1.01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기호	거래사례 단가(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정단가 (원/㎡)	전유면적 (㎡)	산정금액 (원)	결정금액 (원)
가	1,917,465	1.000	0.99692	1.010	1,930,675	41.40	79,929,945	80,000,000

Ⅲ.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및 결정 내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에 근거하여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하되,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거래사례 및 평가전례와 대상 부동산의 제반 특성, 최근 부동산 가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적정하게 최종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기호	소재지	건물명·층·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	평가액(원)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9-29	삼미빌라 제1층 제103호	41.40	20.53	80,000,000
합 계					₩80,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4-29 삼미빌라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148번길 10-8			1층	125.07			
				2층	148.86			
				3층	140.07			
				4층	124.17			
			지층	118.64				
	동소	404-29	대	준공업지역	297.5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1층 제103호	41.40	41.40	80,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1 소유권대지권	20.53			
					---	20.53		
				297.5				
합 계							₩80,000,000.-	
이 하					여	백		

토지·건물
 토 지 : 56,000,000
 건 물 : 24,000,000

배분내역
 56,000,000
 24,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소재 "북인천여자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으로서 인근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내 제1층 제103호로서
외벽: 적벽돌 타일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등,
창호: 샷시 창호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상하수도설비, 도시가스 공급설비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장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으로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 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의 032-450-5594))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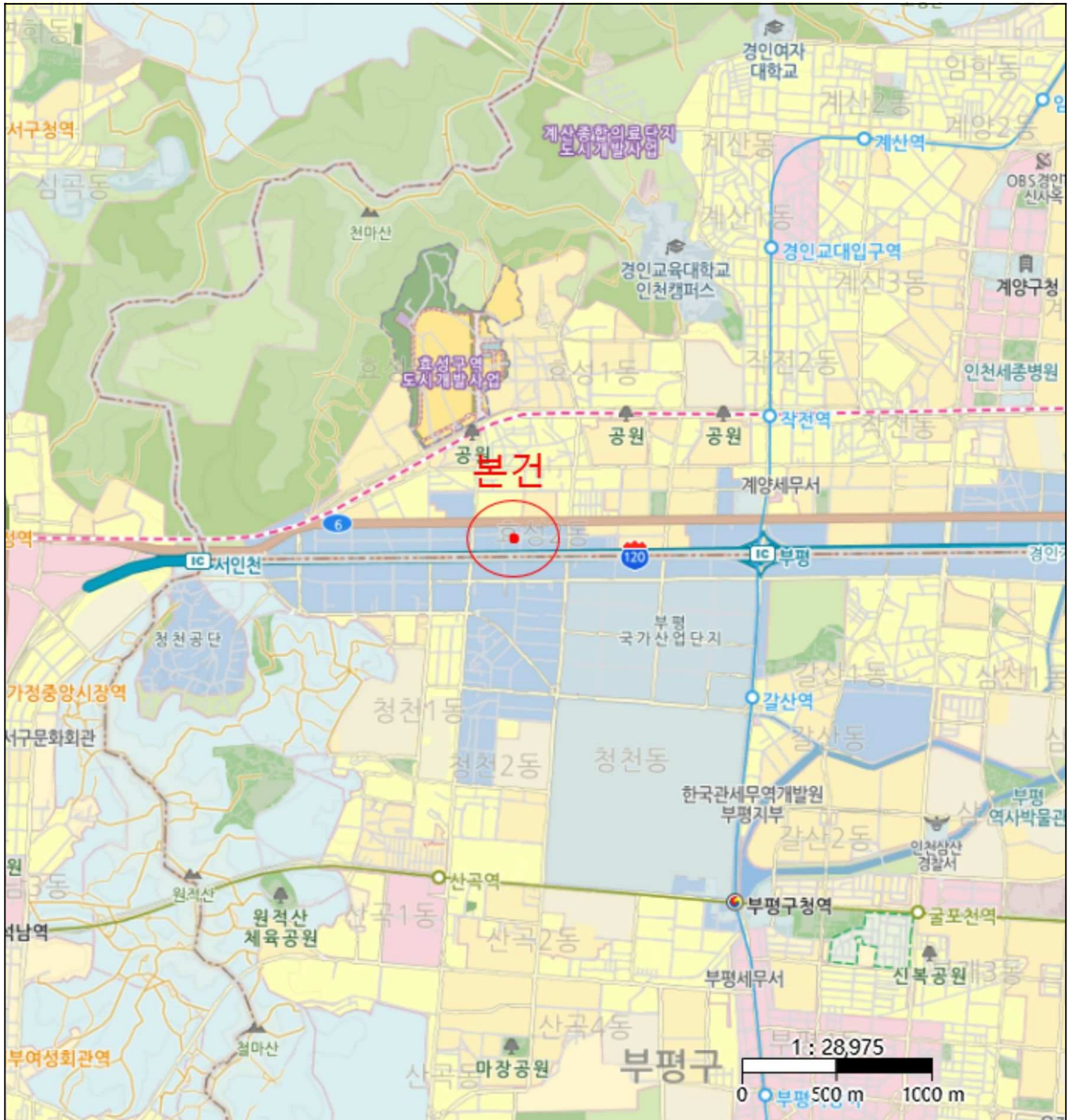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

광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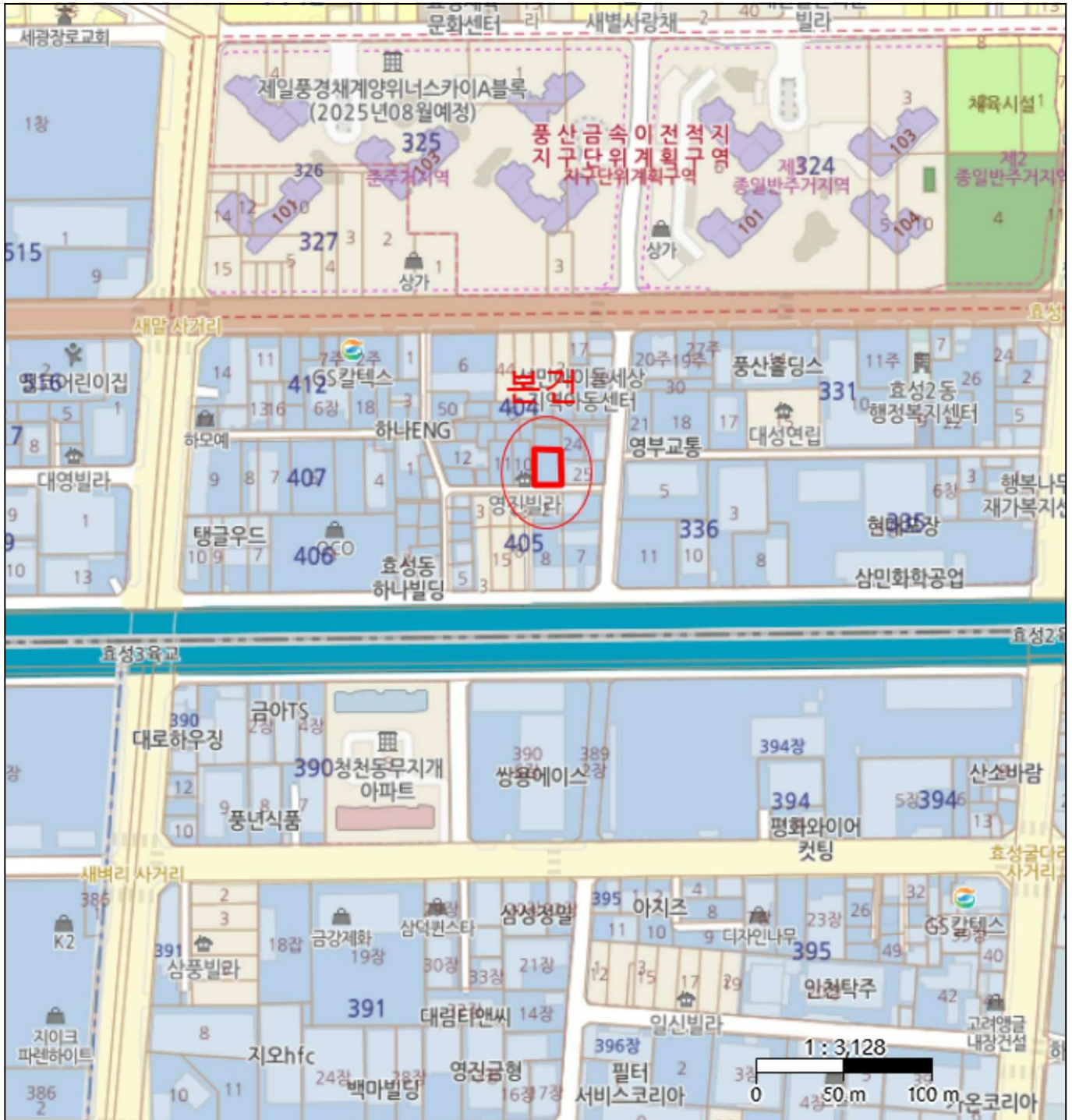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4-29 삼미빌라 1층 103호
-----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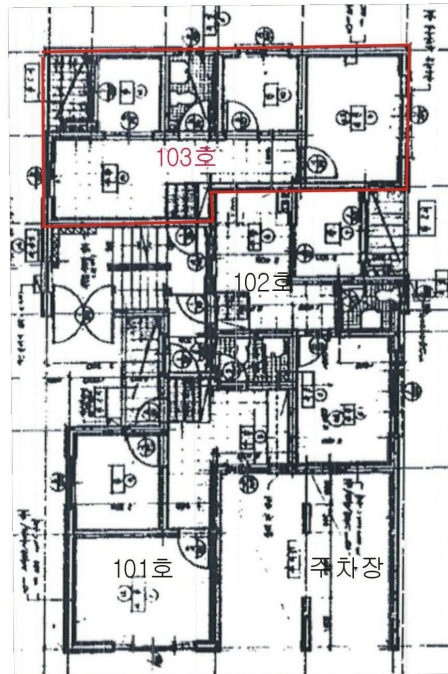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4-29 삼미빌라 1층 103호
-----	-----------------------------------



건물개황도

< 호별배치도 >

Non Scale



본건 (효성동 404-29 삼미빌라 제1층 제103호)

임대상황	임대부분	임차인	임대내역		비고
			임대차보증금	월임대료	
	 본건전체		임대	미상	-
	합계				

